

예산총칙

제 1조 서울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.

제 2조 추경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835,349천원으로 한다.

제 3조 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| | |
|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사업수입 | 70,530천원 |
| ② 사업외수입 | 38,690천원 |
| ③ 보조금수입 | 726,129천원 |

2)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인건비 | 405,686천원 |
| ② 물건비 | 49,346천원 |
| ③ 경상이전 | 81,310천원 |
| ④ 자본지출 | 0천원 |
| ⑤ 사업비 | 274,089천원 |
| ⑥ 사업외지출 | 10,000천원 |
| ⑦ 예비비및기타 | 14,918천원 |

3) 2021년도 사업은 5개 분야, 32개 단위사업
(1차 추경 2021년도 사업은 5개 분야, 30개 단위사업)

○ 따라서 2021년도 전체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.
(수입 835,349천원 / 지출 835,349천원)

제 4조 (명시이월사업) 해당사항 없음

제 5조 (계속비사업) 해당사항 없음

제 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향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(또는 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8조 기타 필요한 사항